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232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 편입	3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23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 3.

(3) 회 부 일 : 2025. 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 편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하여 노무제공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략)</u>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	<u>제3조의2(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u> <u>「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u> <u>제3조의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현행 제3조의2와 같음)</u>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 ----- -----

현행	개정안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1. 제3조의3제1항-----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되 사업장의 특성·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유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음.¹⁾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률, 보험료 산정방식, 부양가족분에 대한 보험료 부담 여부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보험료 부담률)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7.09%)²⁾ 중 본인은 5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 등이 부담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³⁾
- (보험료 산정방식)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됨.⁴⁾
- (부양가족분에 대한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소득·재산 이하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가 되어 부양가족분에 대한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같은 세대에 속한 부양가족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됨.⁵⁾

2)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교 >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	본인 50%, 사용자 50%	본인 100%
	공무원	본인 50%, 국가/지자체 50%	
	교직원	본인 50%, 사용자 30%, 국가 20%	
보험료 산정 방식	소득		소득 및 재산
부양가족분에 대한 보험료 부담	피부양자 등록시 보험료 면제		세대원으로서 세대주와 소득·재산 합산하여 보험료 부담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음식배달 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사업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계약 또는 노무제공 플랫폼⁶⁾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6)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 등

가입자의 피부양자(부양요건 및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로 편입되어 있음.

-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⁷⁾ 및 「고용보험법」⁸⁾에서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⁹⁾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 8)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택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서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18개 직종 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년) 및 「고용보험법」(2021년)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한 것임.

- 노무제공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있어 직장가입자는 납부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높은 상황인데,

개정안은 현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 (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과 같이 노무제공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3.545%씩을 분담하게 되며 일정소득·재산 이하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로 편입되어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제공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노·사 등 이해관계집단 간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노무제공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취지이나,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일정 소득 이하¹⁰⁾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노무제공자의 경우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에도 부합하여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포함되면 보험료의 50%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무제공자의 ‘사용자’¹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입자 자격·상실¹²⁾ 및 건강보험료 납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11)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12)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부¹³⁾ 등 ‘사용자’로서 지게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여러 의무를 누가 이행할지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이 법 적용 시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¹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6제1항에서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이 법 적용 시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음.¹⁵⁾

□ 참고로, 노무제공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230호)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기준은 많은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바, 특정 직역을 위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보수월액의 3.545%)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피부양자인 노무제공자는 직장가입자 전환 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부담금 증가에 따른 사용자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실시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